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7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한병도ㆍ이성윤ㆍ박희승

임오경 • 부승찬 • 박정현

강경숙 • 이기헌 • 강선우

김병기 • 정준호 • 진선미

박지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일이라는 기간이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몸조리를 돕고, 태어난 자녀의 양육 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저출 생이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려 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을 "30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만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만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부를 사 용한 근로자가 그 나머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 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에 <u>10일</u> 의 휴가를	30 <u>일</u>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l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	제19조(육아휴직) ①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u>만 8세</u>	<u>만 12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년</u> 이	<u>6</u> 학년
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	
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u>만 8세</u>	① <u>만 12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년</u> 이	<u>6</u> 학년

하의	자녀들	를 양요	우하기	위히	-0=
근로/	시간의	단축(이하	"육이	トフ)
근로/	시간	단축"여	이라	한다)을
신청さ	하는 건	경우에	이를	허용	-하
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
용이	불가능	등한 경]우, 7	정상조	인
사업	운영어] 중대	한 지	장을	초
래하는	는 경약	구 등	대통령	성령으	로
정하는	는 경약	우에는	그러	하지	아
니하[1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